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배출안내

폐농약용기 수거 가능 품목

살균제 : 바탕색은 분홍색



살충제 : 바탕색은 녹색



제초제 : 바탕색은 황색



생조제 : 바탕색은 청색



비선택성제초제 : 바탕색은 적색



기타약제 : 바탕색은 백색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방법

-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 봉지류만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하여 주세요.
- 영양제 및 친환경·유기농 농약 등 유사용기는 수거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해당지자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만 수거 가능하며, 골프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는 수거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가정과 민간사업장의 폐농약용기(폐농약 포함) 분리 배출 문의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배출안내

수거 가능 품목



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

수거 불가 품목(EPR 대상 품목 등)

- 수거 불가 품목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임

1 재활용 불가 품목



반사 필름



일본 수입비닐(PVC혼합재질)



차광망

2 EPR 대상 품목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비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EPR 대상 품목 수거 안내처

(사)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Tel : 02-6952-3257)

www.recycling-info.or.kr/hongsa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 안내



배출·수거 문의
대표번호 **1661-6620**

배출 · 수거 안내 홈페이지
아래 공금사항 연락하세요

www.농사후.kr

우리마을 공동집하장,
수거사업소는 어디있을까?

배출 및 수거방법은
어떻게 될까?

수거보상비, 지자체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

기타 영농폐기물정책
문의사항



한국환경공단 배출·수거 안내

농민이 영농활동 후 폐농약용기류 배출시 이물질 및 농약 유사 용기가 다량 혼입되어 배출단계부터 철저히 분리하여 이물질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배출자 실명제를 운영합니다.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류, 폐비닐 등) 배출시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하거나 가까운 공단운영 수거사업소로 운반(배출자 책임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안내처



대표전화

농업용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문의는 **ARS 1661-6620**으로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수거사업소 위치찾기 문의는 **www.농사후.kr**에서 배출장소위치찾기 탭을 확인해주세요.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관내 수거사업소

수거사업소	주소	개방일
부산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2길 63	목요일 09시~18시
의령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16	월요일~금요일 09시~18시
사천	경남 사천시 축동면 두량로 94	화요일 09시 30분~15시30분
합천	경남 합천군 쌍백면 쌍백중앙로 624-6	
마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수곡로 65	수요일 09시 30분~15시30분
거창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농공길 46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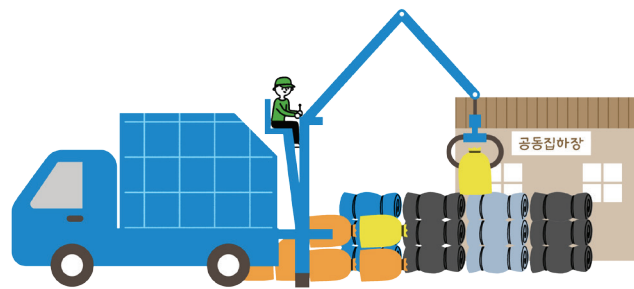
01 발생(농가·마을)

- 농약은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수거(마대 배출)
-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하우스, 로덴, 하이덴) 구분하여 배출



02 분리배출(공동집하장)

- 분리수거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지자체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배출자책임운반)



03 수거(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자)

-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되어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수거·운반

※ 농약용기 수거단가는 매년 실시하는 농약용기 회수사업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4

전표발행(한국환경공단)

- 반입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전표 발행

[서식 제258호] 한국환경공단

수거 전 표

(사업소)	년	월	일	발행번호:						
종	총량	공차량	감	실량	단	가	급	등	급	확인자
										담당자
										팀장

수 집 장 소: 한국환경공단
주 인 등 록 번 호: TEL: 1577-12345
성 명: 윤 반 자
운 려 인 번 호: 123456789

농민·폐비닐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 합니다.
흙, 수분, 식물 잔재물을 제외한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수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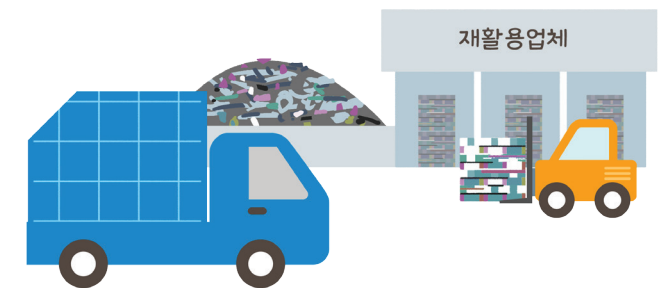
수거비 지급(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급	A급비닐	B급비닐	C급비닐
지자체	140원/kg	100원/kg	60원/kg

※ 지자체별 지급 단가는 상이함

지급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	농약병지
공단	100원/개(300원/kg)	100원/개(1,600원/kg)	80원/개(3,680원/kg)

※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농가·마을)에 지급



06

처리(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